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전번호 제2018 - 05 - 025호

(사건번호 : 201711조사064)

안 건 명 에스케이텔레콤(주)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에스케이텔레콤(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5(을지로2가)
대표이사 박정호

의결연월일 2018. 1. 24.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유통점이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같은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시켜야 한다.
2.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도매 및 온라인 영업채널을 통한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피심인 관련 유통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가입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유통점에 가입유형별로 과도하게 차별적인 높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 포함)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제1, 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판매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1 내지 3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영업채널별·유통점별·가입유형별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표준협정서에 반영하는 것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 액 : 21,10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일반현황

-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동전화 보유가입자 수는 27,048천명으로 전체시장의 48.6%(‘17.9월말 기준)를, 이동전화서비스 매출액은 12조 3,505억원(‘16년도 기준)으로 전체시장의 49.4%를 점유하고 있다.

<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

구 분	가입자 수 (점유율, %)	매 출 액 (점유율, %)
피심인	27,048 (48.6%)	123,505 (49.4%)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알뜰폰(MVNO) 가입자 제외

나. 이동통신시장 현황

- 이동통신 조사대상 기간(‘17.1.1.~8.31) 중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전체 개통 가입자 수는 12,539천명이고, 그 중 도매* 및 온라인 영업관련 전체 가입자 수는 4,900천명(39.1%)이었다.

- 피심인의 조사대상 기간(‘17.1.1.~8.31) 중 이동통신 총 개통가입자 수는 6,133천명이고, 그 중 도매 및 온라인 가입자 수는 2,367천명(38.6%)이었다.

- * **도매부문 영업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서비스 및 단말기 계약을 대리점에 위탁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이 영업하는 형태로서, 주로 집단상가, 지역중심가, 오피스텔, SNS 등에 입점하여 영업

- 피심인의 최근 휴대폰서비스 이용자 부문 누적가입자 수는 ‘16.12월말 기준 24,384천명, ‘17.5월말 기준 24,531천명, ‘17.8월말 기준 24,562천명이었다.

다. 조사경위

- ‘17년 초부터 집단상가, 오피스텔, SNS 등의 이동통신 도매 및 온라인 영업 형태의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장과열 상황이 지속되었다.

※ 일부 언론(아주경제 1.31, 전자신문 4.4, YTN 4.5, IT조선 5.4, 디지털타임즈 5.8)에서 집단상가, SNS 등의 불·편법적 영업 지적

< '17.1.~5월 기간중 국내 이동통신 도매영업 장려금 상황 (단위 : 만원)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16	평균
평균장려금	32.0	31.0	31.3	29.0	29.7	30.6
상위20% 장려금	38.7	37.7	39.7	37.3	38.3	38.3

※ 장려금 지표는 주력 3개 단말기모델에 대한 판매 접점들의 일일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평균값임

- 높은 장려금(38~50만원) 수급을 위하여 특정 유통점에 가입자를 몰아주고 참여 유통점(6~10개점)이 그 장려금을 나눠 갖는 '연합영업'이 성행하였고,
 - 모니터링 강화, 시장과열 경고 등에도 불구하고 도매 및 온라인 유통점 등에서 20~40만원의 불·편법 지원금을 지급·제안하는 사례가 반복되었으며,
 - 유통점이 가입자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통사 장려금이 높을 때 일괄 집중 개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었다.
- 또한, 이동통신 단말기판매 관련 집단상가 및 온라인채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다음과 같은 탄원서 제출, 마케팅 임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시장과열 경고'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17.5.25.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 '17. 1. 1.~ : 집단상가 및 온라인채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17. 4. 10. : 판매점협회, '집단상가 불법 해결해달라'는 탄원서 제출
 - '17. 4. 13. : 이동통신 3사 마케팅임원 간담회(겔S8 출시, 시장안정화 요청)
 - '17. 5. 4. : 이동통신 3사 마케팅임원 간담회(시장과열 경고 전달)

2. 사실조사 결과

가. 조사대상기간

- '17. 1월부터 피심인의 이동통신 도매 및 특수온라인 영업부문에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상황이 지속되어온 점, 조사범위 및 조사량이 넓고 많아 3개월 이상의 시일이 필요한 점, 시장과열 우려 상황이 잦은 행정지도에도 중단되지 않고 향후 지속·반복될 우려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17.1.1.~8.31.까지로 결정하였다.

나. 조사대상

- 피심인의 '17.1.1.~8.31.까지 이동통신 도매 및 온라인 영업부문 총 가입자 2,367,028건 중 가입실적 및 민원제보 등을 토대로 171개 유통점 130,794건 (총 가입자의 5.5%)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 그 중 '17.1.1.~5.31.까지 조사는 가입자 1,420,137건 중 전국 5개 권역별 도매 및 온라인 영업부문(소매, 법인, 방문, 기타 등 제외)의 152개 유통점으로부터 114,510건(8.1%)의 가입자 수(집단상가 29.0%, 전국 로드샵 50.1%, 오피스텔 20.9%)를 고르게 안배하여 표본을 확보한 것이다.
- '17.6.1.~8.31.까지 조사는 가입자 946,891건 중 53개 유통점으로부터 16,284건 (1.7%)의 가입자 수를 표본한 것이다.

< 조사대상 및 조사표본 현황 (단위 : 유통점수 개, 가입자 건) >

구 분		'17.1.1~5.31.	'17.6.1~8.31.	합계
조사대상 가입자수		1,420,137	946,891	2,367,028
유효 표본	유통점수	152	53	152
	가입자수	114,510	16,284	130,794
비 율		8.1%	1.7%	5.5%

나. 행위사실

1)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 '17.1~5월 중 피심인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부문 152개 유통점에서 판매한 114,510건의 판매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 152개 유통점에서 83,600명(위반율 73.0%)의 가입자에게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평균 295,622원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이하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현황 (단위 : 개, 건, 원) >

구 분	조사대상 건수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평균 수준	위반율 (%)
		유통점수	건수		
피심인	114,510 (16,284)	152 (53)	83,600 (10,194)	295,622 (310,761)	73.0 (62.6)

※ 위 표 ()안은 '17.6~8월 조사대상 건에 대한 결과 수치임

2)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 '17.1~5월 중 피심인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부문 관련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 지급한 152개 유통점 중 122개 유통점에서 총 66,475건 (58.0%)
i)신규 5,074건에 216,763원, ii)번호이동 47,830건에 341,402원, iii)기기변경 13,571건에 165,033원의 가입유형 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3조) :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시되는 동일한 공시기간 중에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로 한다.

< 가입유형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건, 원) >

구 분	항목	합계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피심인	대상 건수	114,510 (16,284)	9,967 (1,356)	63,285 (8,070)	41,258 (6,858)
	위반 건수	66,475 (7,803)	5,074 (666)	47,830 (5,825)	13,571 (1,312)
	차별 지원금	295,234 (302,129)	216,763 (241,583)	341,402 (345,874)	165,033 (138,649)

※ 위 표 ()안은 '17.6~8월 조사대상 건에 대한 결과 수치임

3)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 '17.1~5월 중 피심인이 대리점과의 표준협정서 제2조제3항*에 근거한 도매 및 온라인 영업부문의 위탁판매 대가로 30만원 초과 68만원까지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을 211개 대리점에 내려 보낸 것으로 드러났고,

* 표준협정서 제2조제3항 : "대리점"은 본 협정서를 충실히 이행하고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의 지시·지도에 따라야 한다.

< 피심인의 차별적 장려금 지급 대리점 현황 >

구 분	장려금 30만원 ~ 40만원 지급 대리점 수	장려금 40만원 ~ 68만원 지급 대리점 수
피심인	211개 대리점	205개 대리점

※ 방송통신위원회는 '14.12.4일 전체회의에서 피심인 및 관련 유통점 관계자 진술에 근거하여 장려금이 30만원을 초과하면 불법 지원금으로 사용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이후부터 장려금 30만원을 시장안정화의 기준선으로 권고해오고 있음

- 그 중 40만원 이상 차별적 지원금 지급유도 장려금은 기기변경(71,094건) 가입자모집에 비해 번호이동(337,187건) 가입자모집에 4.7배 더 많이 집중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 피심인의 장려금 수준별 가입자모집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장려금 30만원 ~ 40만원			장려금 40만원 ~ 68만원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피심인	50,847	110,126	46,467	75,724	337,187	71,094

※ 자료출처 : 피심인 전산 제출자료

- 피심인의 이러한 가입유형별 차별적 지원금 지급유도 장려금 지급은 최종 유통점에서 신규가입 401,239원, 번호이동 470,608원, 기기변경 367,020원이었고, 이로 인해 전국 117개 유통점에서 56,386건(49.2%)에 달하는 '부당한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행위가 나타났다.

< 가입유형별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현황 (단위 : 건, 원) >

구 분	항목	합계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피심인	대상 건수	114,510 (16,284)	9,967 (1,356)	63,285 (8,070)	41,258 (6,858)
	위반 건수	56,386 (6,982)	3,302 (555)	44,855 (5,660)	8,229 (767)
	차별유도 장려금	451,509 (450,038)	401,239 (386,724)	470,608 (464,036)	367,020 (392,559)

※ 위 표 ()안은 '17.6~8월 조사대상 건에 대한 결과 수치임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법 규정

- o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 제4조제4항·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은 ① 유통점이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을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 ②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 ③유통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
 - ④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대리점에 지시·강요·요구·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 ⑤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단말기유통법 제15조제2항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조제1항, 제4조5항을 위반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이상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 제4조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 ③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5조(과징금)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위법성 판단

-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152개 유통점이 다수 이용자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제5항을 위반한 것이고,
 -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 위반 행위가 조사대상 유통점 전부에서 상당한 비율(1~5월 73%, 6~8월 62.6%)로 드러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지원금의 차별 지급) 피심인의 관련 122개 유통점이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해당 유통점이 단말기유통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지급 금지) 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이고,
 -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행위가 152개 중 122개 유통점에서 상당한 비율(1~5월 58.0%, 6~8월 47.9%)로 드러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피심인이 211개 대리점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여 152개 중 117개 유통점이 가입유형별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피심인이 유통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한 행위로서 단말기유통법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유통점이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같은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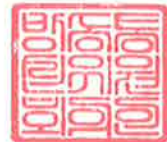
또한,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도매 및 온라인 영업 채널을 통한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피심인 관련 유통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가입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유통점에 가입유형별로 과도하게 차별적인 높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 포함)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 시정조치 명령 “가”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판매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 크기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사업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의 관련 유통점이 이용자에게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가입유형별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와 대리점·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각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18년 00월 00일

○○○(사업자명) 대표자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cm×2.5cm이상

다. 이용자의 신규모집 금지 판단

피심인이 동일한 위법행위를 3회 반복한 점을 볼 때,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 제7호에 따라 신규 모집 금지 적용 요건에 해당되나,

본 건의 경우 이동통신 전체 시장이 아닌 부분시장(도매 및 온라인 영업부문)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이고, 제재 시 이동통신사 보다는 영세한 판매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제재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동통신 시장여건, 제재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자의 신규모집금지 조치는 명하지 않기로 한다.

*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동일유형 위반행위 : i)이통시장 과열 제재('15.3.26), ii)외국인 차별 제재('17.3.21), iii)도매 및 온라인 영업 심결('18.1.24)

라.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 내지 나.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영업채널별·유통점별·가입유형별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표준협정서에 반영하는 것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징금 부과

피심인이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와 피심인 관련 유통점이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1항·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2],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의해 피심인에게 아래와 같이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1) 과징금 부과 상한액

피심인 및 피심인의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 제9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2/100가 부과 상한액으로서(단말기유통법 제15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2] 1호 가목), 이에 따른 피심인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252,800,000천원(천만원 이하 절사)이다.

2) 기준금액 산정

- 피심인의 '17.1.1.~5.31.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피심인의 매출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은 989,446,591천원이다.

피심인의 도매 및 온라인영업 관련매출액 : 위반가입자수(1,036,700명) × 평균가입기간(25.8개월) × 가입자당월평균수익(36,993원) = 989,446,591,980원

- 피심인의 '17.6.1.~8.31.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표본의 대표성이 낮아 '객관적인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판단하여 정액 기준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1]'에 따라, 경쟁 질서의 저해 정도인 지원금 초과지급 위반율 및 부당 차별유도 위반율과 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2% 이상 3% 미만)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17.1~5월) 및 정액기준금액('17.6~8월)을 부과하되, 그 범위 내 중에서 2.6%의 부과기준율과 6억원의 정액기준금액으로 결정한다.

※ 피심인의 시장에 미친 영향 판단요소 : '17.1~5월말 전체이통시장 변동가입자 점유율 41.7%, 도매 및 온라인시장 비중 37.0%

피심인은 제출한 서면의견에서 관련매출액 산정시 적용된 초과지급 위반율만으로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을 판단할 경우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도록 한 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1】 : 중대성 정도 판단시 고려사항 >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되 이와 함께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등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해당 위반행위의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여부 등 시장에서의 영향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중대성의 정도	고려 사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시장의 본질적 또는 장기적 왜곡, 피해규모의 광범위,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	시장의 단기적 왜곡, 피해가 중대하지만 광범위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등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피해의 경미, 이용자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1, 2】 : 부과기준율 >

중대성의 정도	관련매출액 산정 가능시 부과기준율	객관적 관련매출액 산정 곤란시 부과기준금액
매우중대한 위반행위	3% 이상 4% 이하	6억원 초과 8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 이상 3% 미만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 이상 2% 미만	3억원 이하

- 이에 따른 피심인의 기준금액은 위 관련매출액(989,446,591천원)에 2.6%의 부과기준율을 곱한 것과 정액기준금액(600,000천원)을 합한 26,325,611천원이다.

나. 필수적 가중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에 따라 객관적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

하여 정액기준금액을 산정한 경우, 위반기간(2개월 초과 6개월 미만)에 따른 정액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심인이 이에 해당하여 60,000천원을 가중한다.

- 아울러,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의 4회 횡수부터 기준금액의 20%씩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피심인의 필수적 가중을 거친 과징금은 26,385,611천원이다.

다. 추가적 가중·감경

- 추가적 가중은 관련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에 따라 조사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않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0% 범위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피심인은 현장조사 기간('17.6~8월) 중 지원금 초과지급 위반을, 부당 차별 유도 위반에서 '17.1~5월에 비해 뚜렷한 시정 사실이 나타나고, 시장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시장과열 이유로 집중모니터링 대상에 지정된 바도 없어 피심인은 추가적 가중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추가적 감경은 관련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에 따라 i)동 법률의 자율준수를 위해 소속 임원·종업원 등에게 교육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는 경우 10%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ii)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0%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피심인이 최근 이동통신 시장안정화를 위해 장기간(4월중 13일, 9~11월중 60일) 피심인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합동상황반을 구성하고 유통점을 자율관리·감독·교육하는 등의 노력을 취한 바 있고, '17년도 이동통신부문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바도 있어 10%를 감경하고,
 - 피심인이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확연하게 취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장려금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비정상 영업에 대한 근절방안 등을 제출한 바 있어 10%를 감경하도록 한다.

- 추가적 가중·감경 사유를 최종 종합하여 피심인에게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20%를 감경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피심인의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친 과징금은 21,108,488천원이다.

라. 과징금의 결정

이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최종 과징금은 21,100,000천원(천만원 이하 절사)이다.

6. 결론

상기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제15조(과징금)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도 같다.

위 원 장 이 효 성 (인)

부위원장 허 욱 (인)

위 원 김 석 진 (인)

위 원 표 철 수 (인)

위 원 고 삼 석 (인)